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68712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등
원고, 항소인	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출장소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구합395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6. 17.
판 결 선 고	2016. 7. 1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2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,695,600원, 등록세 13,695,600원, 지방교육세 2,530,840원, 농어촌특별세 1,369,550원의 각 부과처분을, 피고가 2014. 2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주택분 재산세 369,600원, 공동시설세 154,660원, 지방교육세 73,920원의, 2011년 주택분 재산세 369,600원, 지역자원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7

설세 166,540원, 지방교육세 73,920원의, 2012년 주택분 재산세 369,600원, 지역자원시설세 173,580원, 지방교육세 73,920원의, 2013년 주택분 재산세 382,800원, 지역자원시설세 171,930원, 지방교육세 76,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① 제7면 제9행의 "확인시켜 준 점,"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, 같은 행의 "②"를 "③"으로 고친다.

"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과세근거 항목에는 '지방세법 제1조 ~ 제154조'라고 기재되어 있고, 뒷면에는 각 세목별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해당 장(章)의 규정들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,"

② 제7면 제15행의 "<제10220호, 2013. 3. 31.>"을 "<제10220호, 2010. 3. 31.>"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7

재판장 판사 김필곤

판사 손삼락

판사 김용하